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99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이건태
서영석 · 김현정 · 임미애
송옥주 · 김정호 · 전종덕
최혁진 · 추미애 · 한창민
용혜인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달성하였지만, 일부 대기업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특히 최근의 저성장 기조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외에서는 영리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실천과 정부·시민 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과 경쟁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 성장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기관등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등의 장이 구매

시행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등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신청,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전용판매장 및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그 밖에 민간기업 및 단체 간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차.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등에 대

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확산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통합적 고용 및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사회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관계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2.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 이주민, 출소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계층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전체 유급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 계층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말한다.

4.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시 투명성, 효율
성, 공공성을 도모하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제품의 개발 및 품질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이익의 재투자 및 지역사회 환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이용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고
려한 소비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구매촉진) 공공기관등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 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간 공동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보급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도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도별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시·도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6조에 따

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조달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민간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노동, 환경, 복지, 경영,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의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국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협의체 등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위한 시행지침(이하 “구매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시행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달사업의 목적과 산업, 지역 및 공공기관등의 설립목적과 운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제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의 집계, 공표·제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매시행지침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구매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매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구매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과정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및 제도개선 실적(이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제출한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이 구매시행계획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도 운영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회적 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사회통합적 고용 및 노동통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와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자격의 기준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4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이나 공공기관등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에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하는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회적경제기업이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통한 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신청을 아니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이 제1항에 따라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공공기관등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

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회적경제기업과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과징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제19조(공공기관등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기관등 별로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공공기관등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등은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수의계약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적 고용창출 실적
2. 창출한 고용의 질
3. 노동통합 기여도
4.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실적
5. 환경에 대한 영향
6.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영향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1조(행정기관 소관사무 민간위탁 시 우선 기회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제22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① 조달청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율경영공시제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노동, 복지, 환경, 인권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 부처의 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후 계약 등 공공구매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의 평가요서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

관계 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장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등

제24조(판로지원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와의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비자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이하 “전자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품질·안전 및 구매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설치·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이하 “전용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2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이하 “구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매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매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교육
2.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관련 실무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생산·품질제고 관련 교육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

매 및 창업촉진 관련 교육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31조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 활성화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

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

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포상 및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등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적경제기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평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4.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5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9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장

2. 제15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3.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4.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 수립
2. 제15조에 따른 직접생산의 확인
3. 제16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4. 제17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가 있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기존 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이 구매 관련 공고를 내고 진행 중인 구매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에 따른 구매시행지침이 공공기관에 공지되기 이전에 공공기관이 수행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의 경우 해당 연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